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98

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위성락·정태호·윤호중

임호선 · 장철민 · 이훈기

서영석 · 남인순 · 박홍배

민홍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장은 원수(元帥)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,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10497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 번호 제1049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"한국은행 총재"를 "참모총장, 「군인사법」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대장을 임명하려는 직위, 한국은행 총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	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	②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	
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	
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	
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	
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	1
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	
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통신	
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장,	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	
위원회 위원장, 국가인권위원	
회 위원장, 고위공직자범죄수	
사처장, 국세청장, 검찰총장,	
경찰청장, 합동참모의장, <u>한국</u>	
은행 총재, 특별감찰관 또는	참모총장, 「군인사법」 제20
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	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직위 중 대장을 임
	명하려는 직위, 한국은행 총
	<u> 재</u>

2. · 3. (생략)

③ ~ ⑥ (생 략)

2.•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